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김용태 · 조정훈 · 서천호
임종득 · 이성권 · 고동진
유영하 · 조은희 · 김성원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품을 생산·유통·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유럽연합(EU)에서는 포장재의 유형별로 재생원료 사용과 함께 순환원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,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의 고도화로 폐기물을 고품질의 석유정제 공정 원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.

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실증과 산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, 제품의 개별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품질 등급 체계가 미비하여 정유·석유화학사 등의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, 제품의 원

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역시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더라도 원활히 활용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,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·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(안 제16조 및 제25조 등).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종이, 유리, 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여야 한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 및 제품등의 친환경 원료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(이하 “품질인증”이라 한다)”을 “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·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(이하 “품질등급인증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품질인증”을 각각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6호 중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2호 중 “품질인증”을 “품질등급인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순환자원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제1항 개정규정의 품질등급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6조(순환원료의 사용 촉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종이, 유리, 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순환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품등의 순환이용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여야 한다.
<u><신설></u>	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 및 제품등의 친환경 원료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25조(순환자원의 품질인증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	제25조(순환자원의 품질등급인증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순환자원의 유

한 품질인증(이하 “품질인증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략)

제26조(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)

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

해성 및 물리적·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(이하 “품질등급인증”이라 한다)--

-----품질등급인증-----

② -----품질등급인증-----

-----품질등급인증-----

③ -----품질등급인증-----
-----품질등급인증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)

① 품질등급인증-----

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(이하 “순환자원사용 제품”이라 한다)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45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, 「관세법」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

7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품질등급인증

7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청문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25조제2항에 따른 <u>품질인증</u> 취소 3. ~ 5. (생략)	제46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품질등급인증</u>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--	--